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6047
----------	-------

발의연월일 : 2023. 12. 21.

발 의 자 : 신현영 · 최기상 · 이소영
조오섭 · 허종식 · 홍정민
고영인 · 김민기 · 양원영
김성주 · 김병기 · 설 훈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의 마약류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을 치료보호하기 위하여 치료보호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음.

마약류에 대한 처벌과 더불어 마약류 중독자를 치료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치료보호기관에서 하고 있으나, 현재 지정된 24개 치료보호기관 중 실제 2개 기관만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치료보호기관의 종합적인 지원 방안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마다 치료보호기관 지원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하여 치료보호기관의 운영과 실질적인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6항 신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19648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까지의”를 “제6항까지의”로, “구성·운영·직무”를 “구성·운영·직무, 치료보호기관의 지원 종합계획 수립·시행”으로 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의 원활한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매년마다 치료보호기관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종합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치료보호기관의 지원 방향
2. 치료보호기관의 운영 실태 및 현황 조사 결과
3. 치료보호기관의 인력 양성 및 공급에 관한 사항
4. 치료보호기관의 치료 연구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치료보호기관의 시설 및 장비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밖에 치료보호기관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19648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40조(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 ① ~ ⑤ (생략) <u><신 설></u>	법률 제19648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40조(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 ① ~ ⑤ (현행과 같음) <u>⑥ 보건복지부장관은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의 원활한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매년마다 치료보호기관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종합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u> <u>1. 치료보호기관의 지원 방향</u> <u>2. 치료보호기관의 운영 실태 및 현황 조사 결과</u> <u>3. 치료보호기관의 인력 양성 및 공급에 관한 사항</u> <u>4. 치료보호기관의 치료 연구 활성화에 관한 사항</u> <u>5. 치료보호기관의 시설 및 장비 개선에 관한 사항</u> <u>6. 그밖에 치료보호기관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u>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의 설치·운영 및 지정,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u>구성·운영·직무</u>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6항까지의----- ----- ----- ----- --<u>구성·운영·직무, 치료보호기관의 지원 종합계획 수립·시행</u>----- -----.
---	--